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논현동 254번지)
 - **오 시 는 길**
지하철 : 7호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 2호선 선릉역 8번출구
버스 :

간선버스	지선버스
351번 (강동공영차고지-국립현충원) 472번 (개포동-신역) 401번 (장지공영차고지-광화문) 640번 (신월동-신논현)	4412번 (개포동-일원동) 3219번 (장지공영차고지-영등대교북단) 3414번 (오금동-고속터미널)
 - **순 환 버 스**
41번 (탄천-개포동)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문의 | 본사콜센터 1600-1004
홈 페이지 www.lh.or.kr



친환경 감성도시

푸른빛고양삼송

A18BL | 1,890세대
삼송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교통, 문화, 자연을 더 가까이 누리는 특권 –
눈부신 삶의 시작, 고양삼송에서 행복의 볼륨을 높여 보세요

- :: 환 경 _ 북한산국립공원, 서오릉, 농협대학의 대규모 녹지축과 연계한 청정단지
- :: 교 통 _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끼고 있으며 서울시청에서 직선거리로 10km 거리의 뛰어난 도심 접근성
- :: 규 모 _ 은평뉴타운, 지축, 원흥지구와 연접한 경기 북부 최대 신도시

 Contents

- 03 Prologue [프롤로그]
- 04 Best Location [지역조감도+교통망도+토지이용계획도]
- 06 Special Space [단지조감도+단지배치도]
- 08 Unit Plan [세대평형]
- 17 Complex Map [단지배치도]
- 18 Complex Map [동호배치도]
- 20 Notice [입주자모집 공고]
- 26 Finishing Materials [주요 마감재 시설내역]
- 2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본 카탈로그의 조감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미지·일러스트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합성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 항목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과의 빠른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가장 주목 받는
고양삼송지구에서 모두가 꿈꿔온 특별한 생활 프리미엄을 경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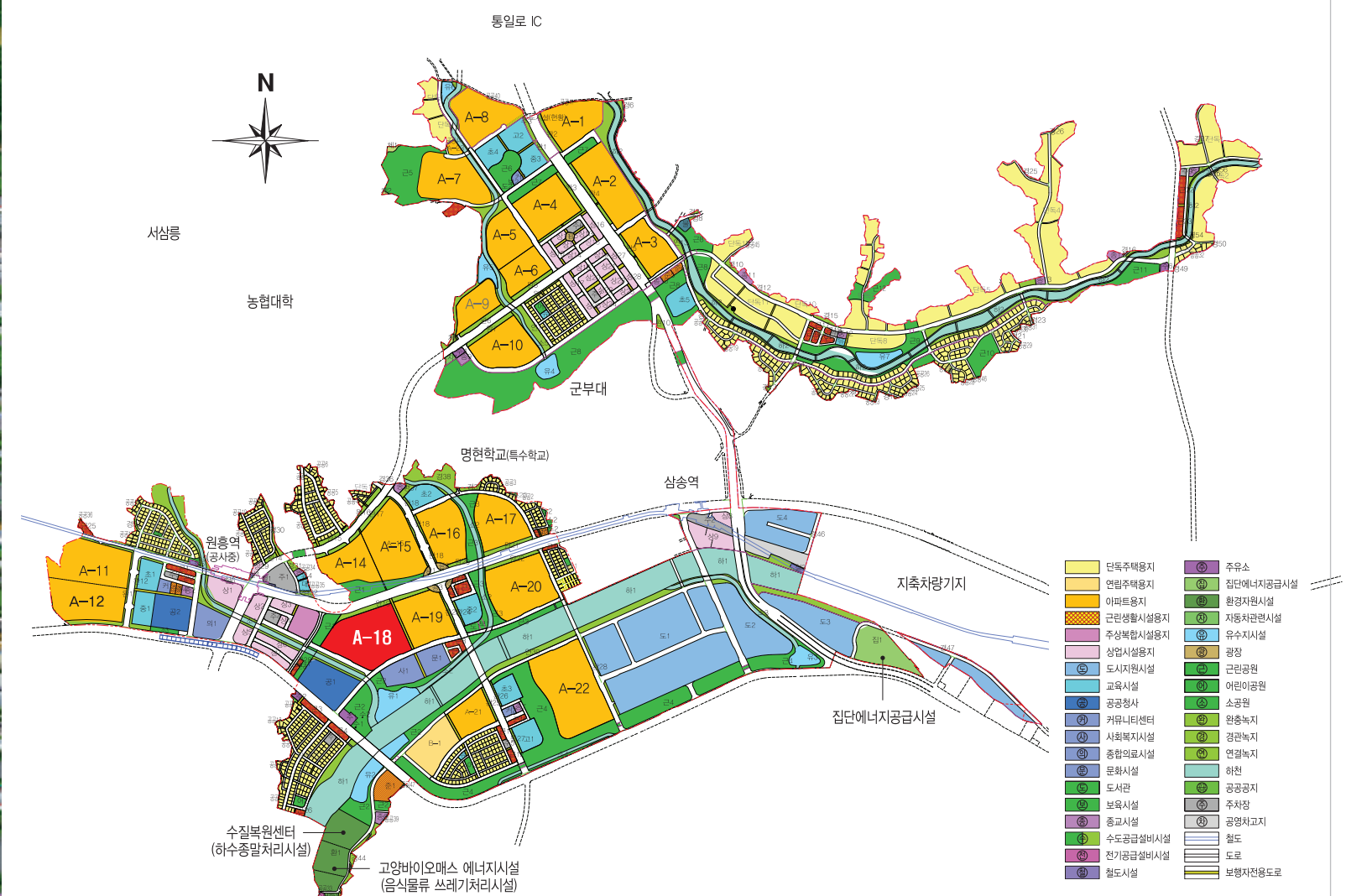
..... 26분 소요

3 원흥 (공사중) 삼승 지축 구파발 3+6호선 연신내 1+3·5호선 종로3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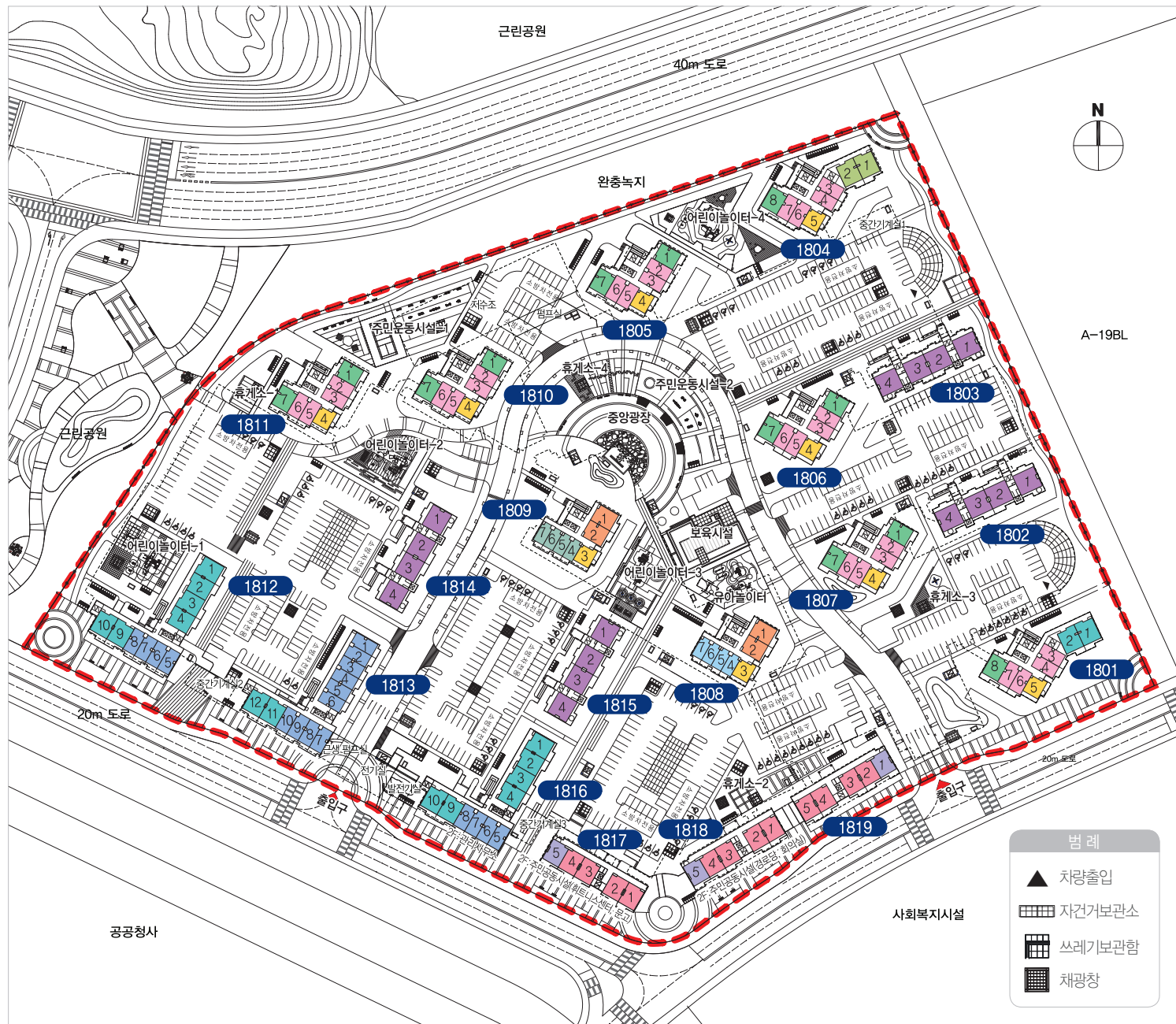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서울, 수도권 등과 연결되는 빠른 교통망** |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원흥역(공사중)외에 통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원흥~강매간 도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예정)등을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등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 **복합적인 기능을 도모하는 편리한 생활환경** | 다양한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한 기타 복합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 **풍부한 녹지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 단지주변에 공릉천, 오금천, 창릉천, 북한산 등 청정자연으로 둘러싸인 친환경 단지입니다.
- **각급 학교와 인접한 우수한 교육환경** | 지구 인근에 초·중교 학교 부지(계획)가 인접하며, 고양삼송지구내에 10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외 도로계획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총 1,890세대 (19개동)							
26AH 72세대	26BH 68세대	36A 192세대	36AH 516세대	36BH 164세대	46AH 70세대		
46BH 223세대	46D 108세대	46E 27세대	51A 188세대	51AH 34세대	59A 228세대		

※ 단지 주변 도로계획은 현재 계획기준으로 본 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보관함의 위치 및 수량은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단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풍부한 자연생태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설계로
생활의 여유로움과 쾌적한 단지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컷::

자연과 사람을 위한 단지설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사합니다

- 쾌적한 단지설계 | 채광, 통풍, 조망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단지배치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 주민공동시설 | 입주인 모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 주민운동시설 | 입주인의 건강 증진과 친목도모, 각종 문화활동을 도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 입주인휴게소 | 입주인 중심의 휴게시설로 휴식, 만남, 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 |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놀이기구가 배치됩니다.

26AH

전용 26.49㎡ | 72세대

26BH

전용 26.49㎡ | 68세대

■ 세대 면적

전 용 면 적	26.49㎡
주 거 공 용 면 적	12.1541㎡
기 타 공 용 면 적	0.8883㎡
주 차 장 면 적	11.7150㎡
계 약 면 적	51.2474㎡

■ 실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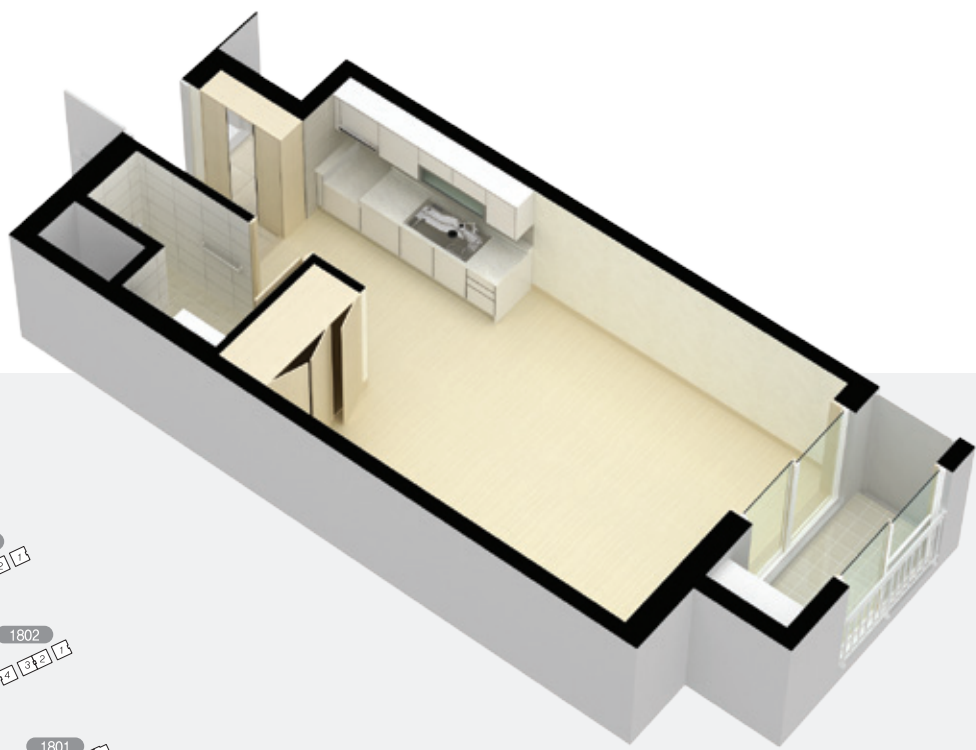
거실/침실/주방/식당	21.87㎡
욕 실	3.02㎡
현 관	1.60㎡

■ 서비스 면적

발 코 니	5.85㎡
-------	-------

해 당 동

26AH : 1809동 (4~7호)
26BH : 1808동 (4~7호)



36A

전용 36.62㎡ | 192세대

36AH

전용 36.62㎡ | 516세대

■ 세대 면적

전 용 면 적	36.62㎡
주 거 공 용 면 적	16.8020㎡
기 타 공 용 면 적	1.2280㎡
주 차 장 면 적	16.1949㎡
계 약 면 적	70.8449㎡

■ 실별 면적

주 방 / 식 당	11.39㎡
욕 실	3.39㎡
침 실 1	12.60㎡
침 실 2	7.29㎡
현 관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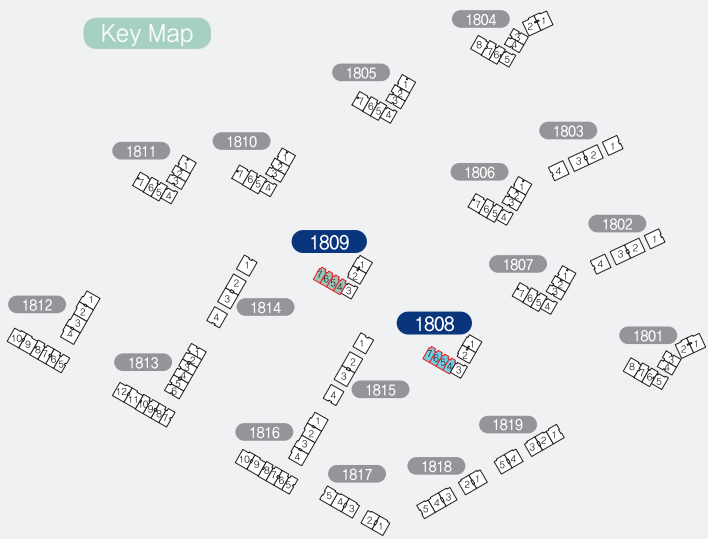
■ 서비스 면적

발 코 니	6.93㎡
-------	-------

해 당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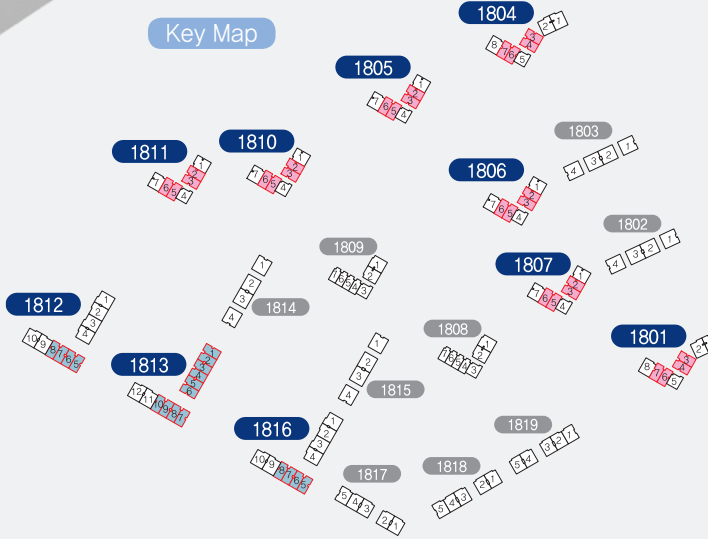
36A : 1812동(5~8호),
1813동(1~10호), 1816(5~8호)
36AH : 1801, 1804동 (3,4,6,7호)
1805~1807, 1810, 1811동
(2,3,5,6호)

Key Map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장전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0.3025=평)
※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입주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신발장, 반침장, 싱크대만 설치)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Key Map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장전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0.3025=평)
※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입주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신발장, 반침장, 싱크대만 설치)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6BH

전용 36.51㎡ | 164세대

■ 세대 면적

전용면적	36.51㎡
주거공용면적	16.7515㎡
기타공용면적	1.2243㎡
주차장면적	16.1463㎡
계약면적	70.6321㎡

■ 실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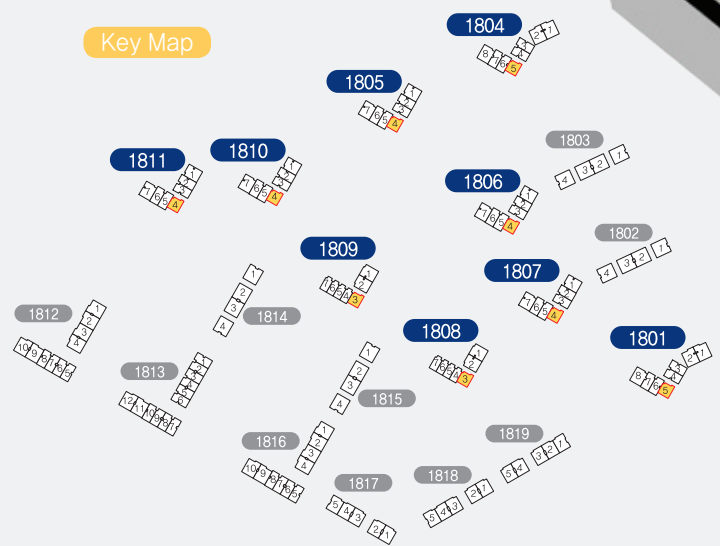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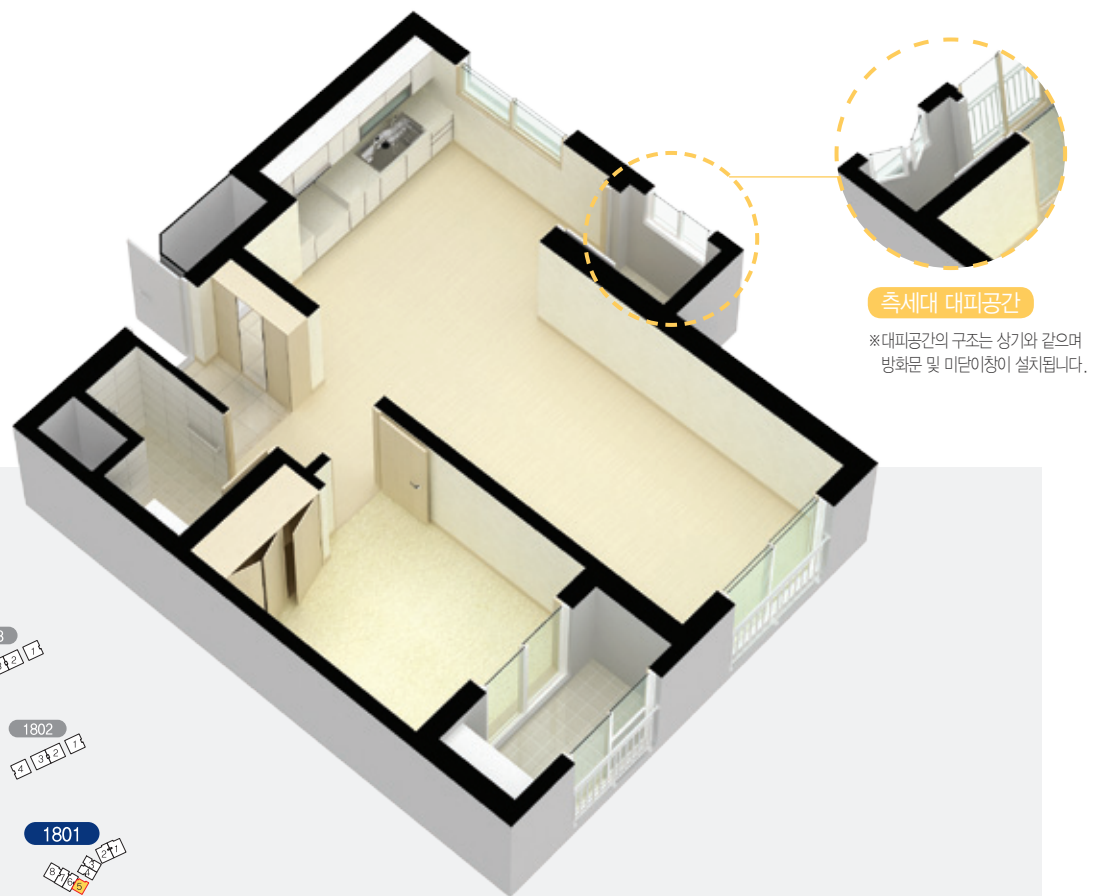
주방/식당	10.88㎡
욕실	3.16㎡
거실/침실	9.81㎡
침실 2	10.43㎡
현관	2.23㎡

■ 서비스 면적

발코니 1	4.65㎡
발코니 2	4.65㎡
발코니 3	5.37㎡
창고	2.47㎡

해당 동

1801동(5호), 1804동(5호)
1805동(4호), 1806동(4호)
1807동(4호), 1808동(3호)
1809동(3호), 1810동(4호)
1811동(4호)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정전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0.3025=평)
※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입주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산발장, 반침장, 싱크대만 설치)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 마감재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6AH

전용 46.91㎡ | 70세대

■ 세대 면적

전용면적	46.91㎡
주거공용면적	21.5232㎡
기타공용면적	1.5731㎡
주차장면적	20.7456㎡
계약면적	90.7519㎡

■ 실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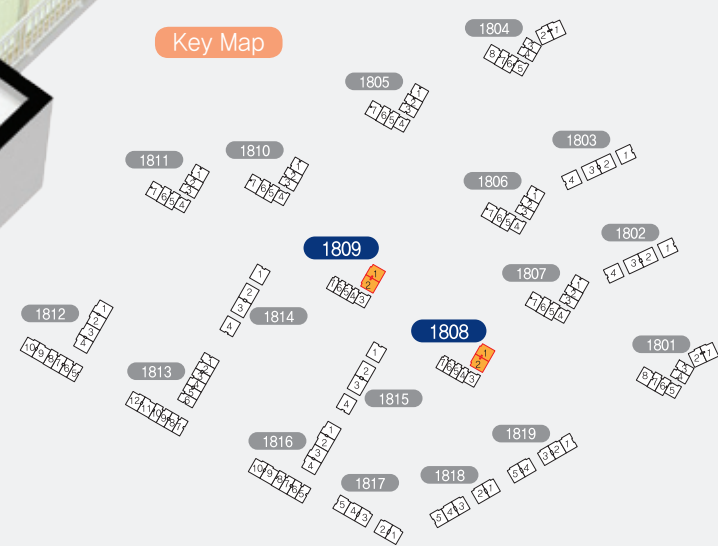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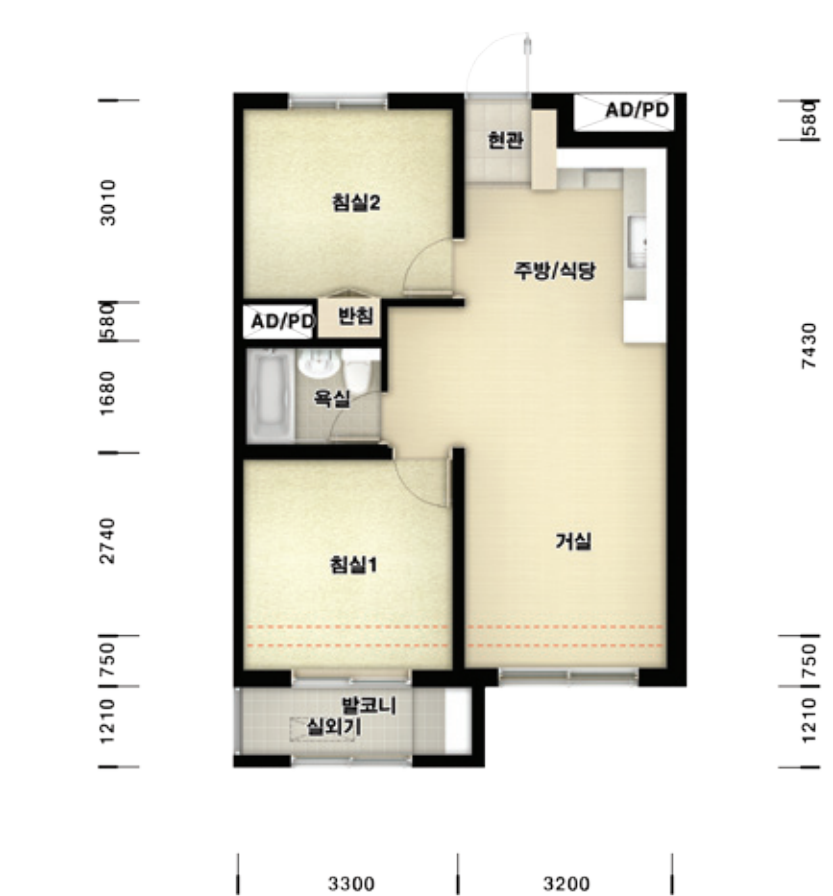
거실	8.06㎡
주방/식당	15.76㎡
침실 1	8.32㎡
침실 2	9.66㎡
현관	1.71㎡
욕실	3.40㎡

■ 서비스 면적

발코니	9.23㎡
-----	-------

해당 동

1808동(1,2호)
1809동(1,2호)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정전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0.3025=평)
※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입주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산발장, 반침장, 싱크대만 설치)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 마감재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 46.91㎡ | 223세대

전 용 면 적	46.91㎡
주거공용면적	21.5232㎡
기타공용면적	1.5731㎡
주 차 장 면 적	20.7456㎡
계 약 면 적	90.7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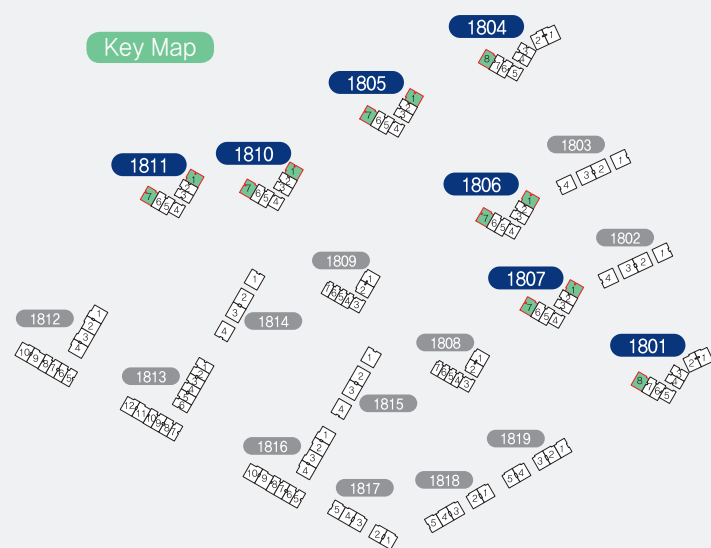
거	실	8.06㎡
주 방 / 식 당		15.76㎡
침 실 1		8.32㎡
침 실 2		9.66㎡
현 관		1.71㎡
욕 실		3.40㎡

발코니 1	9.23m ²
발코니 2	4.48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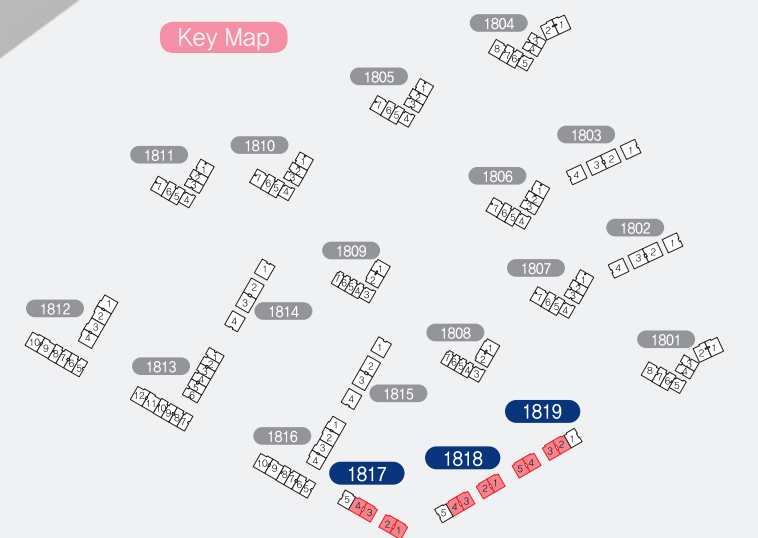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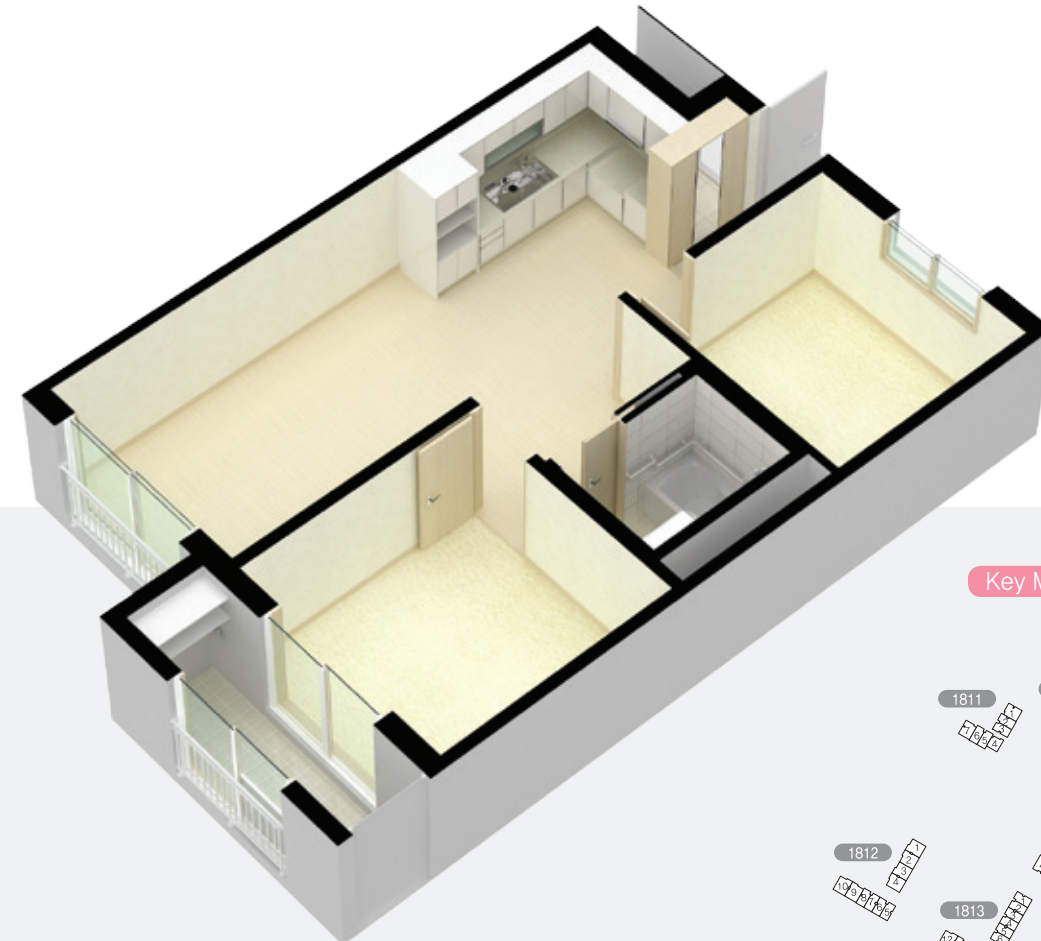
1801동(8호), 1804동(8호)
1805동(1,7호), 1806동(1,7호)
1807동(1,7호), 1810동(1,7호)
1811동(1,7호)



※대피공간의 구조는 상기와 같으며
방화문 및 미닫이창이 설치됩니다.



-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정전 벽체라인입니다.
- ※ 상기 투시도는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정으로 평면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신축을 참고하십시오 (바람임). (㎡ × 0.3025=평)
- ※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입주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선별장, 변형장, 스크린대 설치)
- ※ 세대내 가구, 문짝, 복도까지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정된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투시도는 평면도는 입주자의 평면을 줄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개량단위 사용권장으로 미만을 표기하지 않았으며, 산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0.3025=평)
 ※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입주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장, 반장장, 싱크대만 설치)
 ※ 세대내 가구, 문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6D 타입은 공용실 전용 설계되었습니다. (욕실 미마모 및 욕조 손잡이 설치)

(고령자 전용)

전 용 면 적	46.67㎡
주거공용면적	21.4131㎡
기타공용면적	1.5650㎡
주 차 장 면 적	20.6395㎡
계 약 면 적	90.2876㎡

거	실	8.06㎡
주 방 / 식 당		15.92㎡
침 실 1		8.28㎡
침 실 2		9.15㎡
현 관		1.71㎡
욕 실		3.55㎡

발	코	니	9.23m ²
---	---	---	--------------------

1817동(1~4호), 1818동(1~4호)
1819동(2~5호)

46E

(고령자 전용)

전용 46.67㎡ | 27세대

■ 세대 면적

전 용 면 적	46.67㎡
주거공용면적	21.4131㎡
기타공용면적	1.5650㎡
주 차 장 면 적	20.6395㎡
계 약 면 적	90.2876㎡

■ 실별 면적

거 실	8.06㎡
주 방 / 식 당	15.92㎡
침 실 1	8.28㎡
침 실 2	9.15㎡
현 관	1.71㎡
욕 실	3.55㎡

■ 서비스 면적

발 코 니 1	9.23㎡
발 코 니 2	4.48㎡

해당동

1817동(5호), 1818동(5호)
1819동(1호)



대피공간

측세대 대피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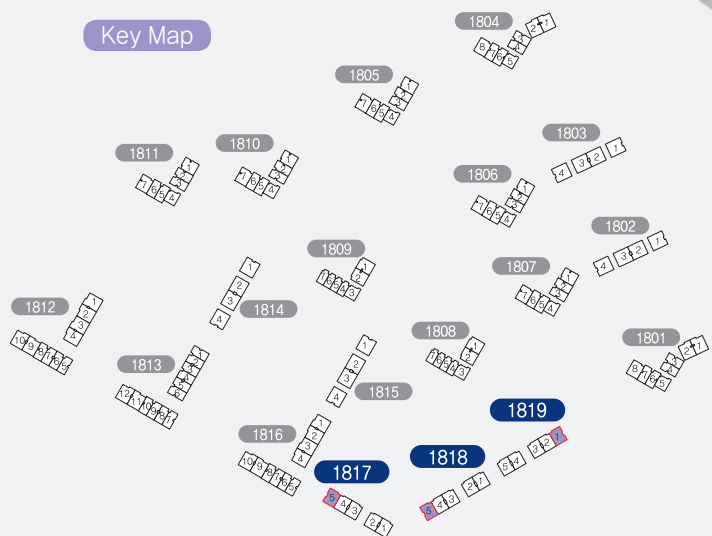
※대피공간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17~19동 : 4층~최상층
(그 외는 발코니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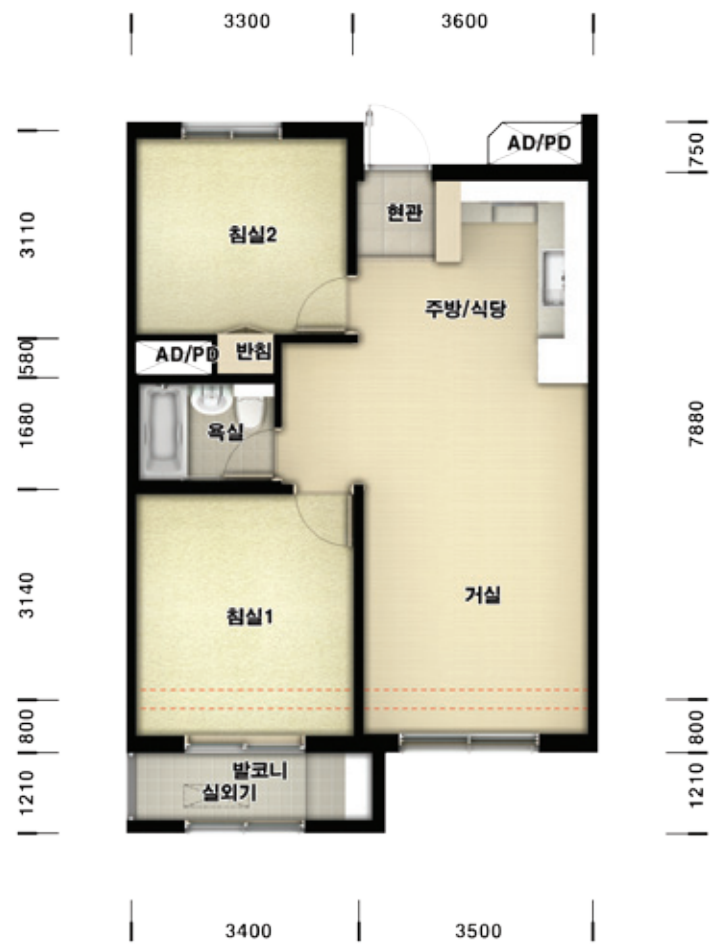
측세대 대피공간

※대피공간의 구조는 상기와 같으며
방화문 및 미닫이창이 설치됩니다.

Key Map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장전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0.3025=평)
※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입주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산발장, 반침장, 싱크대만 설치)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 마감재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6E 타입은 고령자 전용 세대로 설계되었습니다. (욕실 미닫이문 및 욕조 손잡이 설치)



51A

전용 51.98㎡ | 188세대

51AH

전용 51.98㎡ | 34세대

■ 세대 면적

전 용 면 적	51.98㎡
주거공용면적	23.8495㎡
기타공용면적	1.7431㎡
주 차 장 면 적	22.9878㎡
계 약 면 적	100.5604㎡

■ 실별 면적

거 실	10.20㎡
주 방 / 식 당	16.71㎡
침 실 1	9.90㎡
침 실 2	9.86㎡
현 관	1.92㎡
욕 실	3.39㎡

■ 서비스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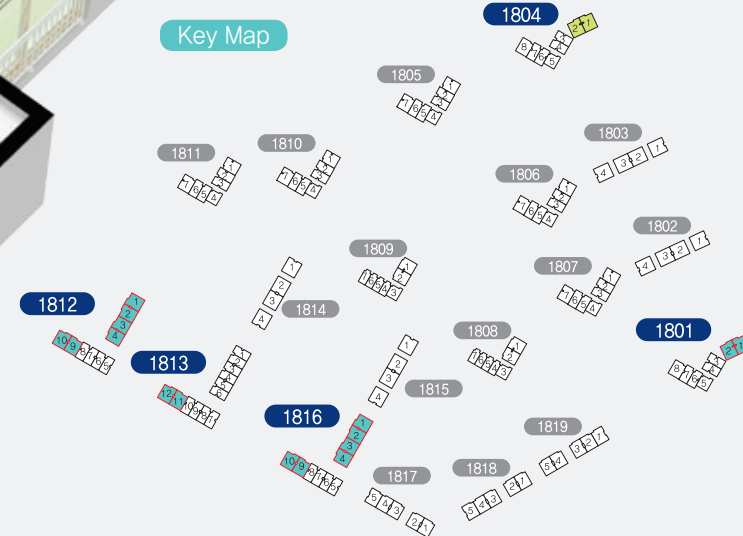
발 코 니	9.99㎡
-------	-------

해당동

51A : 1801동(1,2호), 1812동
(1~4, 9, 10호), 1813동(11,12호),
1816동(1~4, 9, 10호)
51AH : 1804동(1,2호)



Key Map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장전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0.3025=평)
※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입주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산발장, 반침장, 싱크대만 설치)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 마감재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9A

전용 59.25㎡ | 228세대

■ 세대 면적

전용면적	59.25㎡
주거공용면적	27.1851㎡
기타공용면적	1.9869㎡
주차장면적	26.2029㎡
계약면적	114.6249㎡

■ 실별 면적

거실	실	18.96㎡
주방/식당		8.75㎡
욕실	실	3.47㎡
침실 1		10.86㎡
침실 2		7.62㎡
침실 3		7.83㎡
현관		1.76㎡

■ 서비스 면적

발코니 1	12.25㎡
발코니 2	3.74㎡
발코니 3	4.20㎡
발코니 4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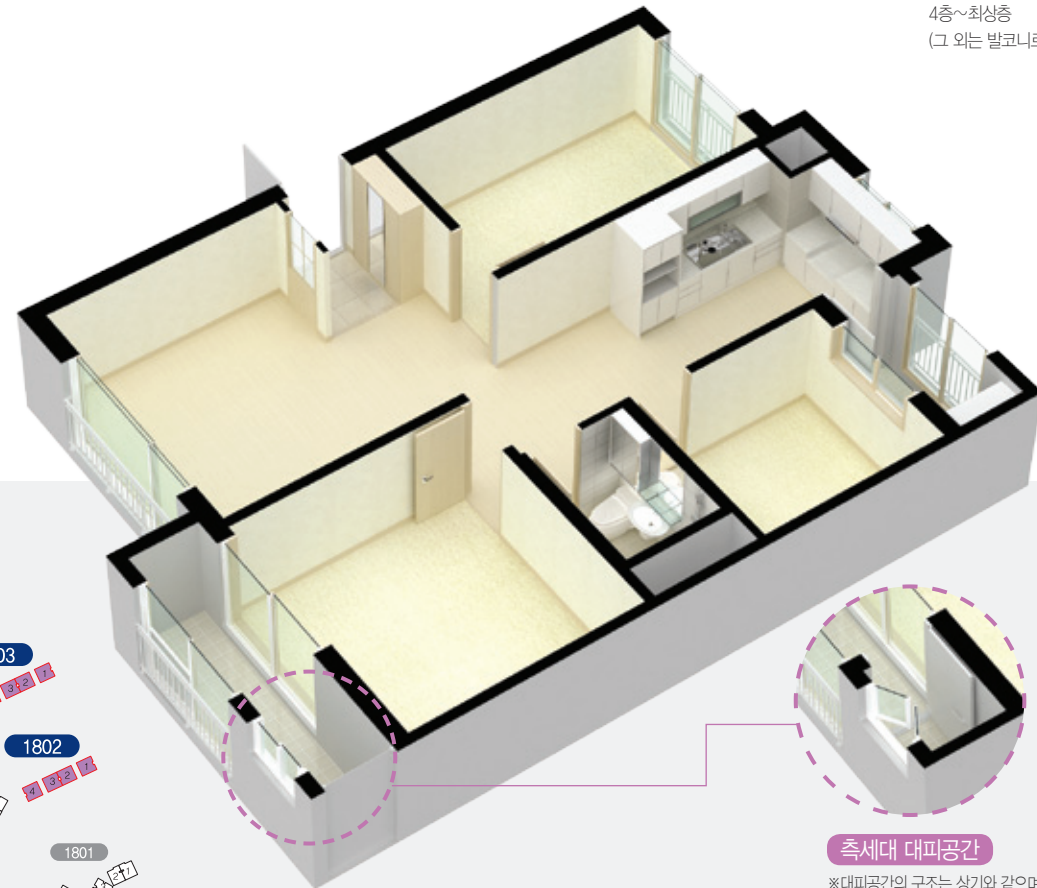
해당동

1802동, 1803동, 1814동, 1815동
(1, 2, 3, 4호)

대피공간

층세대 대피공간

※ 대피공간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2~3, 1814~15동 :
4층~최상층
(그 외는 발코니로 설계)



층세대 대피공간

※ 대피공간의 구조는 상기와 같으며 방화문 및 미닫이창이 설치됩니다.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정전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0.3025=평)
※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입주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산발장, 반침장, 싱크대만 설치)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 마감재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양삼송 A18BL 단지배치도 ::



총 1,890세대 (19개동)

26AH 72세대	26BH 68세대	36A 192세대	36AH 516세대	36BH 164세대	46AH 70세대
46BH 223세대	46D 108세대	46E 27세대	51A 188세대	51AH 34세대	59A 228세대

※ 단지 주변 도로계획은 현재 계획기준으로 본 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보관함의 위치 및 수량은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세대 ::
(입주전 반드시 직접 현장 확인후 사다리차 사용여부 결정)

1801동 전세대	1807동 5~7호	1812동 5~10호	1813동 7~10호
1816동 5~10호	1818동 전세대	1819동 전세대	

:: 고양삼송 A18BL 동호배치도 ::

[illegibl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4	905	906	907
801	802	803	804	805	806	807
701	702	703	704	705	706	707
601	602	603	604	605	606	607
501	502	503	504	505	506	507
401	402	403	404	405	406	407
301	302	303	304	305	306	307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46BH	36AH	36AH	36BH	36AH	36AH	46BH
1805동 총 140세대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4	905	906	907
801	802	803	804	805	806	807
701	702	703	704	705	706	707
601	602	603	604	605	606	607
501	502	503	504	505	506	507
401	402	403	404	405	406	407
301	302	303	304	305	306	307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46BH	36AH	36AH	36BH	36AH	36AH	46BH
1806동 총 126세대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4	905	906	907
801	802	803	804	805	806	807
701	702	703	704	705	706	707
601	602	603	604	605	606	607
501	502	503	504	505	506	507
401	402	403	404	405	406	407
301	302	303	304	305	306	307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46BH	36AH	36AH	36BH	36AH	36AH	46BH
1807동 총 126세대						

[illegible]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4	905	906	907
801	802	803	804	805	806	807
701	702	703	704	705	706	707
601	602	603	604	605	606	607
501	502	503	504	505	506	507
401	402	403	404	405	406	407
301	302	303	304	305	306	307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46BH	36AH	36AH	36BH	36AH	36AH	46BH

1811년 총 126세대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201	202	203	204	근린생활시설				필로티		
101	102	103	104							
51A	51A	51A	51A	36A	36A	36A	36A	51A	51A	

1812동 총 110세대

[illegible]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59A	59A	59A	59A

1814등 총 60세대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59A	59A	59A	59A

1815동 총 56세대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51A	51A	51A	51A	36A	36A	36A	36A	51A	51A			
181등 총 106세대												

1001	1002	1003	1004	1005
901	902	903	904	905
801	802	803	804	805
701	702	703	704	705
601	602	603	604	605
501	502	503	504	505
401	402	403	404	405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주민공동시설

46D	46D	46D	46D	46E
-----	-----	-----	-----	-----

1817동 총 45세대

1001	1002	1003	1004	1005
901	902	903	904	905
801	802	803	804	805
701	702	703	704	705
601	602	603	604	605
501	502	503	504	505
401	402	403	404	405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경로당				
46D	46D	46D	46D	46E
1818동 총 45세대				

1001	1002	1003	1004	1005
901	902	903	904	905
801	802	803	804	805
701	702	703	704	705
601	602	603	604	605
501	502	503	504	505
401	402	403	404	405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근린생활시설

46E	46D	46D	46D	46D
-----	-----	-----	-----	-----

1819동 총 45세대

고양삼송 A18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14. 5. 23 공고)

상기 임대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http://myhome.LH.or.kr)

－예외적으로, 사업지구 철거민, 기관추천대상자(국가유공자등), 고령자전용세대 신청자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청약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고양삼송 A18BL 국민임대주택은 일부세대(46D, 46E)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과 일반 국민임대주택은 이종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취소되며,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공급유형별(우선, 일반 또는 고령자 전용) 및 신청순위별(1,2,3순위)로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접수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날짜가 아니면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본인의 세대원포함)의 소득 ·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현장방문 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모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단, 당해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고령자전용세대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선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문의전화 : 1600-1004)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자는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14. 6. 27(금) 4시이후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 제출기간(2014. 7. 1(화)~7. 3(목) 10:00~16:00)에 직접 접수장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 LH 서울본부)를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인터넷 청약절차



○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내 A18BL 국민임대주택 1,890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태	주택 유형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고령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천원)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26	26AH	26.49	12,1541	0.8883	11,7150	51,2474	72	-	100	40	1809	14,000	2,800	11,200	155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2015년 7월
	26BH						68				1808						
36	36A	36.62	16,8020	1,2280	16,1949	70,8449	192	-	658	214	1801,1804,1805,1806, 1807,1808,1809,1810, 1811,1812,1813,1816	19,000	3,800	15,200	210		
	36AH	36.62	16,8020	1,2280	16,1949	70,8449	516										
	36BH	36.51	16,7515	1,2243	16,1463	70,6321	164										
46	46AH	46.91	21,5232	1,5731	20,7456	90,7519	70	-	220	73	1801,1804,1805,1806, 1807,1808,1809,1810, 1811	35,000	7,000	28,000	290		
	46BH	46.91	21,5232	1,5731	20,7456	90,7519	223	-									
	46D (고령자)	46.67	21,4131	1,5650	20,6395	90,2876	108	108	-	-	1817,1818,1819						
	46E (고령자)	46.67	21,4131	1,5650	20,6395	90,2876	27	27	-	-							
51	51A	51.98	23,8495	1,7431	22,9878	100,5604	188	-	169	53	1801,1804,1812, 1813, 1816	44,000	8,800	35,200	330		
	51AH	51.98	23,8495	1,7431	22,9878	100,5604	34										
59	59A	59.25	27,1851	1,9869	26,2029	114,6249	228	-	183	45	1802,1803,1814,1815	56,000	11,200	44,800	380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위 공급호수 중 우선공급호수는 신청접수 후 잔여호수가 있을 경우 일반공급호수로 전환됩니다.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은 미달시에도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위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23) 현재 무주택세대주(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 가구	3,224,35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가구	3,571,960원이하	
		5인이상 가구	3,750,210원이하	
자산	부동산 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94만원 이하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 우선공급**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 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업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 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세대 원간에 지분 공유시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업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4 공급일정

■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기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 서류제출, 계약)	
우선공급			2014. 6. 9(월)		10시 ~ 16시	2014. 6.27(금) 16:00시 이후	2014. 7. 1(화) ~ 7. 3(목) (10:00 ~16:00)	2014. 8.19(화) 16:00시 이후	2014. 8.26(화)~ 8.28(목) (10:00 ~15:30)	1. 인터넷 접수 (http:// myhome. LH.or.kr) 2. 방문접수 LH 서울 지역본부 2F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고령자 전용주택			2014. 6.11(수)							
전용 50㎡ 미만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	1순위	2014. 6.10(화)							
		2순위	2014. 6.11(수)							
		3순위								
	월평균 소득 50% 초과~ 70% 이하자	1순위	2014. 6.12(목)							
		2순위								
		3순위								
전용 50㎡ 이상	월평균 소득 70% 이하자	1순위	2014. 6.10(화)							
		2순위	2014. 6.11(수)							
		3순위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고령자 전용세대 신청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와 신청인원이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한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5 입주자 선정

■ 배정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고령자	일반공급	우선공급																	
			계	주택공급규칙 제 3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사업지구 철거민	만 65세 이상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한부모 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3자녀 이상가구					
26	-	40	100	-	4	2	7	1	1	1	2	4	2	14	14	4	2	42		
36	-	214	658	10	26	17	43	8	8	8	17	26	17	87	87	26	17	261		
46	135	73	220	9	9	5	15	2	2	2	5	8	5	29	29	8	5	87		
51	-	53	169	8	6	4	11	2	2	2	4	6	4	22	22	6	4	66		
59	-	45	183	20	6	4	11	2	2	2	4	6	4	22	22	6	4	68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2,303,100원 이하	3,224,350원 이하	
	4인	2,551,400원 이하	3,571,960원 이하	
	5인이상	2,678,720원 이하	3,750,210원 이하	
전용면적 50㎡이상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양주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청약자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청약자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자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 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 고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이상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당해지역 고양시 거주자 ▶ 배점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제32조제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한)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재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자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재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년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자녀 이상 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두 무주택 세대주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선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계약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 신흥부부주택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신흥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및 배점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가간이 5년이내(2009년 5월 23일 이후 혼인신고) 이고, ② 그 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가간이 3년 이내(2011년 5월23일 이후 혼인신고) ② 2순위 : 혼인가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2009년 5월23일~2011년 5월22일 혼인신고)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혼인가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1, 2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미성년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임신사실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악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 고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애인, 신흥부부 제외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전용면적 50㎡이상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
	전용면적 50㎡이상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

구 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 고
신흥부부 우선공급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전용면적 50㎡이상	순위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흥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재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와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 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50세 이상 (1964년 5월 24일 이전출생)	만40세 이상 (1974년 5월 24일 이전출생)	만30세 이상 (1984년 5월 24일 이전출생)
② 부양가족수 (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이상 (2009년 5월 23일 이전거주)	3년이상 5년미만 (2009년 5월 24일~2011년 5월 23일 이전거주)	1년이상 3년미만 (2011년 5월 24일~2013년 5월 23일 이전거주)
④ 미성년자녀수 (만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1949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3년 5월 23일 이전) 부양자: 3점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이상 :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 1점			
⑨ 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지당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제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 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강신계약은 제외**

※⑤,⑥,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고령자 전용세대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유형이 46D형 · 46E형(해당동 : 1817동, 1818동, 1819동)으로서 고령자에게 편리하도록 설계된 주택임.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신청인) 나이	－	만75세 이상 (1939년 5월24일이전출생)	만70세 이상 (1944년 5월 24일 이전출생)
②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수	－	－	2인 이상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고양시) 거주기간	10년이상 (2004.5.23 이전 거주)	5년이상 10년미만 (2004.5.24~2009.5.23 거주)	1년이상 5년미만 (2009.5.24~2013.5.23 거주)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1점 ▶ 차상위계층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복지대상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급히 공급하는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철거민, 국가 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4항~제8항」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가점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청약저축 관련서류는 제출할실 필요 없습니다.

6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4.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자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현장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고양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고양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주택관리번호 : 2014000531 ※ 현장 접수자에 한하여 제출	1통

ㄱ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외의 관계인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본),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진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인 전용면적 40~6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우 선 공 급 대 상 자	① 모전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재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기재·파견 근로자 → 한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일용근로자 → 선정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민법상 미성년인 19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시정·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정·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동 일 순 위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건이공작을 거주자 및 비닐건이공작을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건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⑮ 신희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관할 법원경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관할 한국경제리공단
	⑱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⑳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등 임신확인서	시·군·구청
	㉑~㉓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주소서류)	(별도제출 없음)
경 정 시 배 정 서 류	④ 미성년 자녀가 2인이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전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환원장수 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직장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제항 제호·제호, 제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본군위안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⑬ 주 자 선 정 참 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차상대상요변정신장애와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⑩ 청약저축 납입회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 금융결제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년 사본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하별 구분없이 당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 및 전화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2014. 8.26(화)~28(목) 10:00~15:3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한정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인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본), 계약자 인감도장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수를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table><tr><th>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th><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tr><tr><td>10%이하</td><td>100%</td><td>11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10%</td><td>120%</td></tr><tr><td>30%초과 50%이하</td><td>120%</td><td>140%</td></tr></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공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신청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일정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주택 포함)에는 이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지여건	· 고양삼송 A18BL의 시공업체는 이화공업(주)입니다.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여건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에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행형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개발진행 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되고, 기존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에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여건	- 고양삼송지구내 학교시설 중 6개 학교(초3개, 중2개, 고1개)가 개교하였으며, 학교설립 및 학생수용계획은 관할 교육청의 소관사항으로 A18블록 학생 통학구역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 인근에 군부대 등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지구 내·외에서 주·야간에 군시설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격훈련 등으로 인하여 주·야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양삼송지구 내·외에 전기공급시설(케이블헤드), 지구 남측에 집단에너지시설 및 환경자원시설(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매스시설)이 설치 예정이며, 수질복원센터 및 바이오매스시설은 사업지구 외 하수 및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예정으로 향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인근에 명현학교, 농협대학, 원광경마교육원, 골프정(뉴코리아CC, 한양CC)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광로3-1호선(삼송로) 지구의 구간은 확포장 공사 진행 중으로 완공시기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BRT 설치 예정입니다. - 단지와 주변도로 및 녹지 등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내·외 전기, 통신, 수도, 연료공급 및 도로시설물(방음벽, 버스중앙차로, 현스 등) 등이 설치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지 동측 약4.5km 지점에 삼송역(지하철3호선과 통일로, 사측 약 0.7km 지점에 원흥역(지하철 3호선, 공사중)이 위치하며, 남측으로 장릉정(지방하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북측 약 3km 지점서울외곽고속도로 건너편에 레미콘 공장 및 서울시립소화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고압송전선로가 경과(항목 지구 내는 지중화 예정하며, 지구 경계 내·외부에 인접하여 지중화되지 않는 고압철탑 및 전선수가 있으며, 삼송지구 북동측, 남서측 인근에 케이블 헤드(C/서)가 설치됨 예정입니다. - 입주 후 지구 인근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진동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현장여건 및 토지이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상지붕에 공용화 TV안테나와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해당 등은 지붕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12동 1층, 1813동 1층, 1819동 1층에 근린생활시설, 1816동 1층에 관리사무소, 1817동 1층에 주민공동시설, 1818동 1층에 경로당이 설치됩니다. 1817동, 1818동, 1819동은 고령자 전용 세대로 설계되었습니다.(46D, 46E：육실 미마미닛 및 욕조 손잡이 설치) - 근린생활시설 주변세대에 한해 근린점포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조장부의 페인트 및 색상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플렛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 단지조경·쓰레기보관소 등의 위치 및 수량은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합법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남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제조화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접수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중,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따릅니다.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기액에 포함됨**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유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 내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금품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욕 실	좌변기 안전손잡이	고 령 자 지체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신청기간：계약 체결기간 내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시대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팜플렛 배부처	LH본사, LH서울지역본부, LH고양사업본부, LH고양권주거복지센터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당첨자 ARS	☎ 1661-7700
인 터 넷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2014. 5. 23



:: 고양삼송 A18BL 주요 마감재 시설내역 ::

품 목		설치 현황	비 고
현 관	현관도어록	레버식 도어록	
	신발장	HPM	
	현관바닥	자기질 타일	
	현관등	센서등	
거 실	거실바닥재	러그펫	
	거실벽지	실크벽지	
	거실천정지	발포벽지	
주방/식당	싱크대	HPM	
	개수대	스텐언더형	
	렌지후드	일반형	
	주방싱크수전	3단 조절절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BMC급) 상판	
	주방벽 타일	도기질 타일	
침 실	침실바닥재	러그펫	
	침실벽지	실크벽지	
	침실천정지	발포벽지	
	침실문짝	합성수지(여닫이문) / 목재(미서기문)	
	창호	플라스틱 창호	
욕실(조립식욕실)	욕조	인조대리석	
	세면기	도기제	46, 51, 59형만 해당
	양변기	준 원피스형	
	욕조수전	싱글레버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욕신타일	벽 : 도기질타일, 바닥 : 자기질타일	
발코니	발코니 샤시	플라스틱 창호	
	세탁기 수전	세탁기용 가로꼭지	59A형만 해당
		세탁기용 가로꼭지 + 물뿌리개 호스	36, 46, 51형만 해당
	물뿌리개 수전	물뿌리개 부착형 가로꼭지 + 물뿌리개 호스	59A형만 해당
기타/정보통신	비디오폰	컬러비디오폰	
	주방라디오폰	미설치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CCTV시스템	설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 분	항 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물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 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